

『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로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조기 완성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상향 조정 (안 제3조제1항)
 -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 →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40

- “경상북도교육위원”을 “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” 명칭 변경
(안 제4조제2항제3호)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구미시교육청 학무과장”을 “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”으로 명칭 변경(제4조제2항제4호)
- 보조사업의 변경·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6조의2)
 -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경쟁력 제고로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조기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고
- “경상북도교육위원”을 “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”으로 “구미시교육청 학무과장”을 “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

-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의 변경·취소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상향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미글로벌교육특구를 조기에 육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